



보험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금 청구 관련 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3) 청구서류(병원서류 등) 4)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사유	☐ 수술 ☐ 입원 ☐ 골절 ☐ 사망 ☐ 장애 ☐ 납입면제 ☐ 진단(암,CI 등) ☐ FNB ☐ 기타()
------	---

피보험자 인적사항 ☐ 보험수익자 동일(보험수익자와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 정보란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	--	------	--

보험수익자 정보 ※ 아래 작성하신 정보(연락처, 국적, 영문명)로 고객정보가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 자택 ☐ 직장				
E-mail	☐ E-mail 안내장 수령 (본인이 계약자인 모든 보험계약의 안내장을 E-mail로 전환합니다.) ※ 안내장 수령방법을 E-mail로 선택하시면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관련 안내장(변액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계약관리 내용 안내장 및 변액보험자산운용보고서 포함)이 E-mail로 발송됩니다.				
송금요청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수익자본인계좌)				
피보험자와 관계		외국인 및 외국법인	국적 :	영문명 :	(영문명 및 국적 확인가능한 신분증 필수)

안내방법 선택 ※ 보험 수익자에게 안내됩니다.

진행단계 안내	☐ 문자메시지 ☐ E-mail ☐ 전화 ※ 진행단계 안내는 미체크 / 전화체크 시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드립니다.
지급내역 안내	☐ E-mail ☐ 우편 ☐ 전화 ※ 지급내역 안내는 미체크 / 전화체크 시에도 E-mail 또는 우편을 발송드립니다.

청구 세부 내용

발생원인	☐ 질병 ☐ 일반재해 ☐ 교통재해 ☐ 자살 (초진병원명 :)
사고유형	☐ 교통사고 ☐ 반복작업 ☐ 운동 ☐ 물건이동 ☐ 넘어짐 ☐ 낙상 ☐ 폭행 ☐ 기타사고
교통사고시	☐ 보행자 ☐ 탑승자 (본인차종 : 상대차종 : 자동차 보험회사 :)
사고내용 상세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분) 사고장소 : 상세기재 :

보험금 청구서 필수 확인사항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제4항 등 법령에 의한 안내사항

담당부서(연락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심사기간(예상지급일),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첨부된 개인 (신용)정보 처리동의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및 지급절차 안내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부서 : 보험금팀 / 심사 진행사항 문의 및 연락처 : 푸르덴셜생명 보험금 전담 상담 CS Center(1588-3374, 단축번호 5번)
-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지급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 지연 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요청하신 방법으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위탁업체(손해사정법인)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필수 사항 확인 후 체크	년 월 일	☐ 수익자(청구자)	(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 (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 (서명)

※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그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보험사기(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금지된 범죄이며,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작성란

담당LP명		접수경로	☐ 지점내방 ☐ Life Planner® ☐ FAX ☐ 등기우편	Agency 접수인	
연락처	FSS 서명란	(서명)	LP 서명란		(서명)
팩스번호	Agency 결재	(서명)	메모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아래 동의사항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각 동의함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 또는 수익자란 한쪽에만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더라도, 양쪽 모두 체크하신 것으로 적용됩니다.

01. 개인(신용)정보 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동의함 ☐
보험수익자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계약 유지·관리, 증빙서류 보존
-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관련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국적, 직업, 재정정보, 계좌정보
- 당사 및 타보험사[채신관서(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사고정보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일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거래종료일 : 1)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 보험료 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음.(이하 동일)

02. 개인(신용)정보 의 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동의함 ☐
보험수익자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조회 목적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 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포함),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조회 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일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0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동의함 ☐
보험수익자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회계법인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당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고객안내발송대행업체, 리서치 업체, 전산개발·운영업체, 위탁 콜센터 등), 그외 당사와 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SM, AM, 보험대리점 등)
- 의료기관 등 :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등
- Wish Plus특약 가입시 계약자가 지정한 기부단체 및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위탁업무 포함), 외부감사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진료비 심사, 재보험금의 지급,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고객안내자료 제작 및 발송 등 안내 관련 업무,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의 안내 및 고객 응대 등
- 의료기관 등 :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기록 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 등
- Wish Plus 특약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관련 업무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일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 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필수)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질병·상해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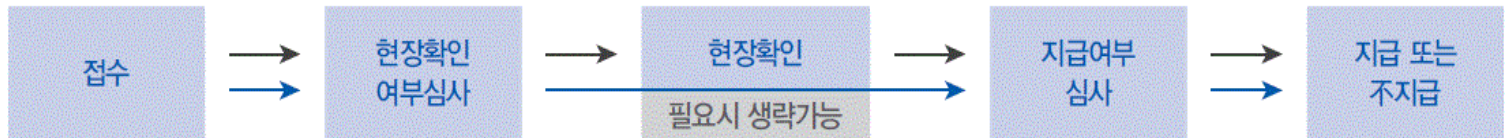
· 고유식별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함 ☐
보험수익자	동의함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구분	성명	서명	구분	성명	서명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친권자)		
보험수익자			법정대리인(친권자)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작성 및 서명을 하시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각각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방법	· 라이프플래너® 보험금 청구서비스 / 등기우편 접수 / Agency 내방 접수 / FAX 접수 / 인터넷 접수 (단, FAX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300만원 이하의 입원, 수술, 골절진단에 한함)
보험금 청구 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또는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이하의 (암)입원, (암)수술, 골절진단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라이프 플래너® 또는 CS Center(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조회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라이프 플래너® 또는 CS Center(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보험금 심사 절차	· 제출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금 지급 심사부서에 접수 될 경우,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안내하여 드립니다. ·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진행과정 및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당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당사는 보험금 및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료심사	·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하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제3자를 정하고 장해상태,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을 기초로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 비용은 푸르덴셜생명이 부담합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합니다.
손해사정 선임	· 보험금 청구는 보험업법 제185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손해사정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되며, 이 경우 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 불공정 행위 금지	· 보험 계약자 등이 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기일(비조사시 3일, 조사시 10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안내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청구 내용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및 분쟁조정절차	·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안내 드립니다.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www.prudential.co.kr / CS Center : (보험금 전담상담) : 1588-3374 (단축번호 5번)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생명 보험금팀 재심사 담당자앞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내용 ·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기준이며, 병원발급 서류는 병명, 병원직인,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암)입원, (암)수술, 재해골절진단, DNB 청구 시 각각 300만원 이하 건은 사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 송금계좌는 수익자 본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 보험금 심사시 현장확인 및 병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동의서 등을 추가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미 FATCA협약」 및 「OECD CRS 협약」에 따라, 법인이 수익자인 사망 및 1급 보험금 청구시 법인용 본인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건은 추후 법인 또는 개인용 본인확인서를 추가 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담당 라이프플래너® 또는 CS Center (보험금 전담 상담) : 1588-3374(단축번호 5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역		청구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기본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보험금 청구용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2장 / ③ 신분증 사본		보험회사
	추가	①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②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당사 양식), 수익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용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③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수익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청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친권자 1인 청구 가능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주민센터 보험회사
사망	기본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추가	① 재해 사고시 : 재해입증서류* ②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③ 수익자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대표수익자 지정서(당사 양식, 수익자 전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별상이 주민센터보험 회사
입원	기본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수술	기본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추가	① 재해 수술시 : 재해입증서류*		서류별상이
장해	기본	① 후유장애진단서 ② (일반)진단서 : 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치환술, 비장·신장·안구적출, 장기전절제에 한함		의료기관
	기본	① 재해사고 시 : 재해입증서류* ②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진단	공통	기본	①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암	기본	① 조직검사결과지 ②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백혈병 : 골수검사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①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의료기관
	심근경색	기본	①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 결과지, 근효소검사결과지 등)	의료기관
골절	기본	①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예 : 의사소견서] 또는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 결과지 또는 ③ 진단서 중 선택		의료기관
재해입증서류*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⑤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⑦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 확인원		서류별상이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
 ·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